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무역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덕근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,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·산업별 수요에 특화된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출연 가능 기관으로 현행 무역보험법상 정부, 다른 기금, 은행에 더해 지방자치단체, 기업을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02.19.~04.0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제2조의2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기업의 출연금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(기금의 조성)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.</u> <u>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</u> <u>2. 기업의 출연금</u>
<u>제3조 (생략)</u>	<u>제2조의2 (현행 제3조와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041